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26 발의연월일: 2021. 10. 22.

발 의 자: 강병원·강선우·권칠승

김두관 · 김성주 · 오영환

유기홍 • 이용호 • 이정문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품목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도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함. 그러나 최근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고 모든 제조공정이 기존 허가사항과 동일하다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이하"GMP"라 함)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따라 기존에 총리령에서 규정한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업자등의 GMP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또한, 의약품등의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을 별도로 두어 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·평가하도록 하고,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은 정기적으 로 GMP에 관한 교육·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GMP 조사·평가 및 GMP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·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, 제42조제5항, 제69조제1항제1호, 제69조의5제1항제1호, 제82조제2항, 제92조의2제4호, 제96조제3호의2·제3호의3)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를 제38조의5로 하고,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8조의2(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판정 등)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종류 또는 제형별로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합하다는 판정(이하 "적합판정"이라 한다)을 받은 후 제조한 의약품등을 판매해야 한다.
 - ②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적합판정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·조사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및 제3항에 따른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의3(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·평가하거나 품질에 관한 자료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38조의4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·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의약품 등의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(이하 "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"이라 한다)으로 임명한다.

- 1. 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
- 2.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②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이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의 지식, 전공, 관련 분야 자격 및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1. 제38조에 따른 생산 관리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 조사·평가
- 2.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
- 3.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평가 자료 검토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으로 하여금 의약품등을 제조·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·창고·점포나 사무소(제42조제7항에 따른 해외제조소를 포함한다),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나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조·품질관리 조

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 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- ④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진술 요구 등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「행정조사기본 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8조의4(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·품질관리기준 교육·훈련기관을 지정하여 교육·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 과정, 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제5항 전단 중 "제38조의2"를 "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5까지"로 한다.

제69조제1항제1호 중 "품목허가를 받은 자"를 "품목허가를 받은 자(품목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"로 한다. 제69조의5제1항제1호 중 "의약품등("을 "의약품등(수입하려는 의약품등 을 포함한다."로 한다.

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후단 중 "승인"을 "승인·적합판정"이라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사전 검토"를 "사전 검토, 적합판정"이라 한다. 제92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제96조제3호의2 중 "제38조의2제1항"을 "제38조의5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의3 중 "제38조의2제2항"을 "제38조의5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69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합판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적합판정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8조의2(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
	관리의 적합판정 등) ① 의약품
	등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
	종류 또는 제형별로 제조 및 품
	<u> 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</u>
	(이하 "적합판정"이라 한다)을
	받은 후 제조한 의약품등을 판
	매해야 한다.
	②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의약품
	등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
	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
	다. 적합판정 받은 사항 중 총리
	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
	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	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
	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의
	약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의
	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
	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
	<u>인·조사할 수 있다.</u>
	④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및
	제3항에 따른 준수 여부 확인

<u><신 설></u>
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- 제38조의3(의약품등의 제조·품 질관리 조사관)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·평 가하거나 품질에 관한 자료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38조의4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교육·훈련 과정을 이 수한 사람을 의약품 등의 제조 ·품질관리 조사관(이하 "제조 ·품질관리 조사관(이하 "제조
 - 1. 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

 원
 - 2.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
 - ②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이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

조·품질관리 조사관의 지식, 전공, 관련 분야 자격 및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 범 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제38조에 따른 생산 관리 등
 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
 사항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
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
 - 수 여부 조사・평가

3.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에 관한 평가 자료 검토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 ·품질관리 조사관으로 하여금 의약품등을 제조·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·창고·점포나 사무소(제42조제7항에 따른 해외 제조소를 포함한다), 그 밖에 조 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나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 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조·품질관 리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 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<신 설>

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- ④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 ⑤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진술 요구 등의 절차・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
- 구 및 의견 진술 요구 등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8조의4(제조·품질관리 조사 관의 교육 등)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 기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전문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·품 질관리기준 교육·훈련기관을 지정하여 교육·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 과 정, 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기

<u>제38조의2</u> (생 략)

제42조(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) 지 ① ~ ④ (생 략)

⑤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7항·제10항·제12항, 제31조의5, 제32조, 제35조의2, 제36조, 제37조,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, 제38조, 제38조의2, 제40조,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이까지, 제69조의3및 제75조를준용한다. 이 경우 "제조" 또는 "생산"은 각각 "수입"으로, "제조업자" 또는 "품목허가를 받은자"는 각각 "수입자"로, "제조소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"는 각각 "영업소"로 본다.

⑥ ~ ⑨ (생 략)

제69조(보고와 검사 등) ① (생 ^조략)

1. 약국개설자, 의료기관 개설자, 의약품등의 제조업자·품목허가

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<u>세38조의5</u> (현행 제38조의2와 같
<u> </u>
세42조(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)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5
<u>제38조의3부터</u>
제38조의5까지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세69조(보고와 검사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1
품목허가

관의 지정 및 위탁 등 필요한

를 받은 자·수입자 또는 판매업자, 특허권등재자, 등재특허권자등,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자,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, 임상시험실시기관,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, 비임상시험실시기관, 그 밖에 의약품등을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의 요구

- 2. ~ 3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69조의5(해외제조소에 대한 현 지실사 등) ① (생 략)
- 1. 수입되는 <u>의약품등(</u>이하 이 조에서 "수입의약품등"이라 한다) 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 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-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82조(수수료) ① (생 략)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

를 받은 자(품목허가를 받으려
는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하려는
자를 포함한다)
2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9조의5(해외제조소에 대한 현
지실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1의약품등(수입하려는
의약품등을 포함한다
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허가 · 갱신 · 등록 · 신고 · <u>승인</u>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허가・갱신・등록・신고・승
 인・지정, <u>사전 검토</u> 신청을 하
 려는 자
- 2. ~ 3. (생략)
- 제92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기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 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~ 3. (생 략) <신 설>
- 제9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 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 - 1. ~ 3. (생략)

<u>승인</u>
· 적합판정
·
1
사전 검토, 적합판
<u>정</u>
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92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
의제)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 중
공무원이 아닌 사람
제96조(벌칙)
·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<u>제38조의2제1항</u> (제42조제	3의2. <u>제38조의5제1항</u>
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	
함한다)을 위반하여 식별표시	
를 하지 아니하고 시판하거나	
식별표시를 등록하지 아니하	
고 시판한 자	
3의3. <u>제38조의2제2항</u> (제42조제	3의3. <u>제38조의5제2항</u>
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	
함한다)을 위반하여 변경등록	
을 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	
3의4. ~ 7. (생 략)	3의4. ~ 7. (현행과 같음)